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지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080

발의연월일: 2025. 3. 19.

발 의 자: 박지원·허성무·정진욱

권칠승・이재관・황 희

이소영・박해철・김 윤

양부남 · 정동영 · 황명선

임미애 · 김승원 · 김준형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, 공공청사의 신·증축 등 일정 사업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고 있음.

그런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며 국가 소멸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, 인구감소에 대한 효과적 인 대응을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 정책이 신속히 집 행될 필요가 있음.

이에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시의성 및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(예비타당성조사) ① (생	제38조(예비타당성조사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	②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	
대상에서 제외한다.	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11.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
	법」 제2조에 따른 인구감소
	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
	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